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2
----------	------

제출년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2013.12.12)으로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이 일반직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정원을 조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일반직으로의 전환

- 기능직 :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으면 : 관리운영직군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면 : 직렬 신설  
\* 운전, 속기, 시설관리
- 별정직 : 비서, 의회전문위원 → 별정직 존치,  
그 외 → 전문경력관
- 계약직 : 비서인력 → 별정직,  
그 외 : 기존대로 일반직 정원대체

### 나. 총정원 : 1,293명(현행과 같음)

- 일 반 직 : 1,076명 → 1,245명(+169)
- 별 정 직 : 4명 → 2명(△2)
- 기 능 직 : 170명 → 0명(△170)
- 전문경력관 : 0명 → 3명(+3)
- 기 타 : 43명(현행과 같음)

### 다. 종류별, 직급별, 기관별 정원표 조정 : 별표 1 ~ 별표 3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결과 : 생략
  - (2) 규제심사 : 완료
  -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원은”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각각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u>정원</u> 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 - <u>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u> 은-- -----.

[별표 1]

## 충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구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고
비율	99% 이상	1% 이내	1. 일반직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이하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 충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1% 이내	25% 이내	8% 이상

2. 지방전문경력관

구분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

3. 연구·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연구관	지도·연구사
비율			10% 이내	90% 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34% 이내	34% 이내	-	32% 이상	-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종·직급별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b>총 계</b>	<b>1,293</b>						—
<b>정무직 계</b>	<b>1</b>						—
시 장	1	1					
<b>일반직 계</b>	<b>1,245</b>						—
3 급	1	1					
4 급	7	4	1	1		1	
5 급	63	25	1	3		9	25
6급 이하 계	<b>1,174</b>						
<b>일반·별정 계</b>	<b>1</b>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						—
<b>별정직 계</b>	<b>2</b>						—
5급 상당	—						—
6급 상당 이하 계	2						—
<b>전문경력관 계</b>	<b>3</b>						—
<b>연구직 계</b>	<b>—</b>						—
연 구 관	—						
연 구 사	—						—
<b>지도·연구직 계</b>	<b>41</b>						—
지도·연구관	4				4		
지도·연구사	37						—

# 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1호, 2012.12.11., 일부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법률 제11531호,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

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 계약에 따른다.

제5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 비서관·비서를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부칙 제4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각 일반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3. 주요내용

가.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통합(안 제3조, 안 제9조의4, 안 제11조, 안 제12조의2, 안 제17조, 안 제21조의2,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1조의2, 안 제31조의6,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3조의2, 안 제38조의4, 안 제42조의2, 안 제46조, 안 제50조, 안 제50조의3, 안 제51조의4, 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55조의2, 안 제55조의3, 안 제57조, 안 제62조, 안 별표1, 안 별표8, 안 별

표9, 안 별표10)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내에 방호직렬, 운전직렬 등을 신설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

## □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제정안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방법)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일에 타 법령에서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된 뒤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람을 포함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 직렬(관리운영직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직렬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별정직공무원의 구분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담당업무의 내용·난이도·곤란도·책임도 및 상당계급 등을 고려하여 이 영 시행당시 종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정원의 감축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전문경력관 또는 임용령 별표 1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직렬의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 압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영은 별표 1의 직무군이 지정된 직위(이하 “전문경력직위”라 한다)에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으로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전문경력직위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전문경력직위의 직무군 구분 등) ① 전문경력직위는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또는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각 직무군별 직무성격은 별표1과 같다.

② 제3조에 따라 전문경력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여야 하며, 직무군을 지정한 이후에는 직무성격 또는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12.12.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별정직공무원의 전문경력관 임용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별정직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일에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른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